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	
번호	

발의연월일 : 2008년 4월 11일

제 안 자 : 강원돈 위원회 1인

1. 제정이유

재향군인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 등 각종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3조)
- 나. 마포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(안 제4조)
- 다. 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등에 재정 지원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지방자치법 제22조
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3항
- 나. 예산조치 : 필요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향군인” 이라함은 「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.
2. “재향군인회” 라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“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군인회”를 말한다.

제3조(예우)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.

- 1.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
- 2.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
- 3.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4조(예산지원)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5조(지원대상사업)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- 1.국가를 위하여 희생·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
- 2.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 교육사업
- 3.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
- 4.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

5.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·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
제6조(지원신청 및 보고)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
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.
②제1항에 의한 보조금의 신청방법과 사업비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사
항은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조금 관리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중복지원 금지 적용례) 이 조례 시행후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
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
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.